



IMMIGRATION UPDATE

ISSUE MONTH | April 2011

- SUMMARY OF CHANGES
- FURTHER CHANGES—PENDING

3HR focus

IMMIGRATION UPDATE

최근 수개월간 발표되어 온 다소 모호했던 이민법 개정내용이 확정되어 2011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Tier 1 폐지에 따른 대체 비자 Tier 1 (Exceptional Talent)

기존 Tier 1(General) 비자가 2012년 4월까지 1000명으로 발급자수가 제한되는 새로운 Tier 1 (Exceptional talent)비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청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로서 각 분야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과학,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들을 영국으로 유치시키고자하는 영국 정부의 계획하에 신설되었습니다.

투자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Tier 1 (Investor) and (Entrepreneur) 의 지원 자격 완화

5백만 파운드를 투자해야하는 Tier 1 (investor) 비자의 경우 영국 거주 3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금액이 천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2년후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5만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높은 잠재성이 있는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자는 Tier 1 (Entrepreneur) 항목을 신청할수 있으며, 공동 투자자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5백만 파운드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경우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visitor visa) 는 전망있는 사업가로서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추후 Tier 1 (Entrepreneur)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에 아무 영향이 없도록 투자자 및 사업가에 대한 체류 조건 또한 상당히 완화되어 허용되는 영국의 체류기간이 현재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Tier 2 (General) – 이민자 수 영구적 제한 및 영어 필수조건 강화, Skilled roles 재정의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Tier 2 (General) 비자발급 제한수치가 향후 12개월 동안 연간 20,7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영어능력 필수조건은 이전 A1 level에서 B1 level로 향상되었으며 Skilled work 의 수준은 NOF Level 4(graduate level)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은 신규 책정된 최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족군 (shortage occupation list) 에 포함되는 직종도 재정립되었습니다.

현재 UK 내 Tier 2(General) 비자 소지자 중 비자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을 요하는 자는 위의 언급된 발급자 제한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Tier 2 (Intra-company transfer) – 연봉기준 변경 및 영국 체류 기간 제한

Tier 2 (ICT) 비자의 경우 이민자 제한 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규 도입되는 개정안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자하는 신규 비자 신청자의 경우 연봉이 최소 4만 파운드 (12개월미만 체류시 2만4천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체류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5년 이후에는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하며 12개월 경과 후 신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폰서쉽 증서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할당 절차 변경

이민자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의 영향으로 할당된 COS는 반드시 발급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COS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민자 수 제한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자는 제한된 (restricted) COS 를, 그 외 신청자는 제한되지 않은 (unrestricted) COS 를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어떠한 COS 가 적절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규정 강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되어 모든 신청자는 소득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어 능력 및 영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하기위해 'Life in the UK'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형이 실효된 상태여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본인의 해당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Further changes—pending

이미 발표 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Tier 1 (Post-study work) – 2012년 4월 폐지 예정
- Tier 4 비자 스폰서 및 비자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가 'Highly- Trusted Sponsor' 이고 새로 도입된 승인 규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2011년 4월 21일부터 잠정적으로 책정된 이민자수 제한 대상입니다. Tier 4 신청자는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영국체류 허용 여부, 고용 허가 여부, 체류 허용 기간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이 2011년 7월에서 2012년 4월 사이에 발표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총체적인 이민자수를 제한하고자 하지만 투자자와 사업가 및 고급인력의 영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Soyoung Lee LLB (Hons)
Head of Korean Services
Telephone (main) +44(0)20 7194 8140
Telephone (direct) +44(0)207194 8150
Email: soyoung.lee@3hrplc.co.uk

May Cheung LLB (Hons)
Immigration Consultant
Telephone (main) +44(0)20 7194 8140
Telephone (direct) +44(0)207194 8151
Email: may.cheung@3hrplc.co.uk



Authorised to provide immigration advice or services by 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
Ref No. F201000126